

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「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」(소방청훈령)

◇ 개정이유

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「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」을 개정하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가.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기간 변경(제2조)

나.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 변경(별표)

◇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